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013

발의연월일: 2024. 9. 13.

발 의 자: 김선교·김상훈·구자근

김석기 · 김성원 · 김위상

서천호 · 최수진 · 김예지

이헌승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현행법에 따라 일부 범죄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등높은 수준의 책임성이 요구되고, 특히 성범죄나 스토킹범죄, 마약류및 음주운전 관련 사건과 같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중대범죄에 관해서는 그 사실을 해당 임직원이 근무하는 기관에 통보하여 징계 등 대응조치의 사각지대를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와관련 국민권익위원회도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직무와 관련된 사건 외에도 성폭력범죄 등 성 관련 비위행위, 스토킹범죄, 마약 관련 사건, 음주운전 등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대 해서도 수사기관 등이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조사・ 수사결과를 통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임직원의 도덕성・책임 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밖의 수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으로, "기관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를 "사건에"로 하며,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직무와 관련된 사건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관련 비위행위와 관련된 사건
 -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 지행위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 력범죄
 -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 관련 비위행위
-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 킹범죄와 관련된 사건
-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에 따른 범죄와 관련된 사건
-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 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종료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기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34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제34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종료 통보) 다음 각 등 개시·종료 통보) 감사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 관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 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 대하여 다음-----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 ----사건에-----일 이내에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된 사건 1. 감사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2.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 기관 해당하는 성관련 비위행위와 3.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된 사건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_ 제4조 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 관련 비위행위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와 관련된 사건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 2에 따른 범죄와 관련된 사건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